

# 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12
----------	-----

2022. 11. 30.(수)  
산업경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- 나. 제출일자 : 2022년 10월 31일
- 다.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2일
- 라. 상정일자 : 제405회 충청북도의회(정례회)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 
(2022년 11월 24일 상정의결)
- 마. 주요내용 :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수정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농정국장 이제승)

### 가. 제안이유

- 농업인 공익수당의 지원대상 및 범위 등을 보다 확대하고, 이에 맞게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조례의 제명 변경(안 제명)
- “농업인” 을 “농어업인” 으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변경  
(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부터 제12조까지)
- 공익수당 지급액을 “연 50만원” 에서 “연 60만원” 으로 상향·조정  
(안 제9조)
- 공익수당 지급 제외대상 및 기준을 변경 등(안 제11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복순)

#### 가. 제출배경

-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사회 공동화 대응과 농업인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2022년부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추진 중
- 그러나 지급액과 수혜 대상자 등 타 시도와의 형평성, 제도의 실효성 등의 이유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음

#### 나.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

- 내수면 어업인과의 형평성
  - 이 조례는 공익수당 지급대상을 농업인에만 한정하고 있어 내수면 어업인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
  - 강원, 충남, 전남, 경북, 경남 등 타 시도의 경우 어업인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
- 타 시도와의 형평성
  - (지급금액)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원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총 9개 단체로 평균 60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, 충북은 평균 수준에도 못미치는 50만원 지급
  - (자격요건) 지급대상을 3년 이상 충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, 3년 이상 농업경영체 정보등록과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 등 타 시도 대비 자격요건이 높은 수준임
- 내수면어업인과 타 시도 지급금액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, 조례 개정을 통해 타 시도 수준에 준하는 금액으로 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

#### 다. 조례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

- 조례안의 전체적인 용어 정비 : 적절함
  -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맞게 공익수당 지원 대상을 농업인 뿐만아니라 내수면어업인을 포함하고자 농업을 농어업으로, 농업인을 농어업으로 변경함

- 따라서 조례의 제명도 ‘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’에서 ‘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’로 변경한 것으로 다른 이견 없음
- 안 제2조는 농어업과 농어업인, 농업경영체, 농어업인 공익수당 등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여 이 조례안의 적용대상 등을 명확히 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
- 안 제8조제1항의 경우 ‘거주하는 농업인’을 ‘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’으로 변경하여 충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되나,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
- 안 제9조제1항에서 공익수당 지급액을 ‘연 50만원’에서 ‘연 60만원’으로 상향하여 농어민의 공익적 가치 보상 요구에 대응하고,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
다만, 상향조정된 지급액에 대한 재원조달방안과 지급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
- 안 제11조는 지급제외 대상을 종전 8개호에서 4개호로 축소하여 공익수당의 지급대상을 확대하였음
  - 특히, 제1호의 ‘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2,900만원’을 ‘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,700만원’으로 조정한 것은 쌀 직불금 지급대상과 타 시도 지급제외 대상과 비교했을 때 적정하다고 판단됨
  - 또한, 군인연금 등 3대 연금 수급자 등에 대한 제한사항을 삭제하여 공익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은퇴 후 귀농한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개정이라고 판단됨

## 라. 종합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,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음

- 다만, 아래와 같은 사항은 면밀한 검토와 설명이 필요함
  - 안 제8조제1항에서 ‘주소’ 를 두도록 하여 요건을 강화한 이유에 대한 설명과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‘3년 이상’ 의 요건을 완화하지 않은 것은 타 시도(대부분 1년 이상)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
  - 안 제9조와 안 제11조의 지급액 증액편성과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도와 시군의 재정 상황, 재원마련 방안과 지급방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설명이 필요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없 음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없 음”

6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

가. 수정이유

- 충청북도 내 더 많은 농어업인들이 공익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제한을 완화하고자 함

나. 수정내용

- 제11조제2호 중 “5년내” 를 “3년내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“5년내” 를 각각 “2년내” 로 함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-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수정안 포함)

#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112-1
----------	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2년 11월 24일

제안자 : 이의영 의원 등 6명

## 1. 수정이유

- 충청북도 내 더 많은 농어업인들이 공익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제한을 완화하고자 함

## 2. 수정내용

- 제11조제2호 중 “5년내” 를 “3년내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“5년내” 를 각각 “2년내” 로 함

##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1조제2호 중 “5년내” 를 “3년내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 
“5년내” 를 각각 “2년내” 로 한다.

## 수정안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11조(지급제외) 다음 각 호의 <u>농업인</u>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.</p> <p>1. 신청 전(前)연도의 <u>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,900만원 이상인 농가</u></p> <p>2. 신청 전(前) 5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<u>농업인</u></p> <p>3. 신청 전(前) 5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<u>농업인</u></p> <p>4. 신청 전(前) 5년내 농지·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<u>농업인</u></p>	<p>제11조(지급제외) ----- ----- <u>농어업인</u>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,700만원 이상인 농어가</u></p> <p>2. 신청 전(前) <u>5년내</u>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<u>농어업인</u></p> <p>3. 신청 전(前) <u>5년내</u>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<u>농어업인</u></p> <p>4. 신청 전(前) <u>5년내</u> 농지·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<u>농어업인</u></p>	<p>제11조(지급제외)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3년내</u> -----</p> <p>3. ----- <u>2년내</u> -----</p> <p>4. ----- <u>2년내</u> -----</p>

##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수정안 포함)

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” 를 “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” 로 한다.

제1조 중 “농업과” 를 “농어업과” 로, “농업인” 을 “농어업인” 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농업인 공익수당” 이란 농업·농촌” 을 “농어업인 공익수당” 이란 농어업·농촌” 으로, “농업인에게” 를 “농어업인에게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“농어업” 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.
2. “농어업인”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 - 가.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
  - 나.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
  - 다.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
3. “농어업경영체” 란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.
5. “농어업·농촌의 공익적 기능”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.
  - 가. 식량의 안정적 공급
  - 나.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

다.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

라.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

마. 생태계 및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전

바.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

제3조제1항 중 “농업의” 를 “농어업의” 로, “농업인” 을 “농어업인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농업인 공익수당” 을 “농어업인 공익수당” 으로, “농업인” 을 “농어업인” 으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농업인의 참여)” 를 “(농어업인의 참여)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농업인” 을 “농어업인” 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농업인” 을 각각 “농어업인” 으로 한다.

제6조제3항제5호, 같은 항 제6호가목 및 나목 중 “농업” 을 각각 “농어업” 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농업의” 를 “농어업의” 로, “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농업인” 을 “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업인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농업인 공익수당” 을 “농어업인 공익수당” 으로, “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인” 을 “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” 으로, “농업인” 을 “농어업인” 으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중 “농업경영체” 를 각각 “농어업경영체” 로 하고, 같은 호 중 “농업에” 를 “농어업에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농업인” 을 “농어업인” 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농업인” 을 “농어업인” 으로, “50만원” 을 “60만원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농업인 공익수당” 을 “농어업인 공익수당의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농업인” 을 “농어업인” 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및 제4항 중 “농업인” 을 각각 “농어업인” 으로 한다.

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농업인” 을 “농어업인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,900만원 이상인 농가” 를 “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,700만원 이상인 농어가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5년 내” 를 “3년내” 로, “농업인” 을 “농어업인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5년내” 를 “2년내” 로, “농업인” 을 “농어업인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5년내” 를 “2년내” 로, “농업인” 을 “농어업인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2조 중 “농업인” 을 각각 “농어업인” 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상향 등에 관한 적용례) 제8조, 제9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른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농업과 농촌</u>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<u>농업인</u> 공익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<u>농업</u>”이란 「<u>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</u>」(이하 “<u>법</u>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호에 따른 <u>농업</u>을 말한다.</p> <p>2. “<u>농업인</u>”이란 <u>법</u> 제3조제2호에 따른 <u>농업인</u>을 말한다.</p>	<p><u>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<u>농어업과</u> ----- ----- ----- <u>농어업인</u>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“<u>농어업</u>”이란 「<u>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</u>」 제3조제1호에 따른 <u>농업</u>과 「<u>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</u>」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<u>어업</u>을 말한다.</p> <p>2. “<u>농어업인</u>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가. 「<u>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</u>」 제3조제2호에 따른 <u>농업인</u> 나. 「<u>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제2호에 따른 <u>임업인</u> 다. 「<u>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</u>」 제3조제3호에 따른 <u>어업인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3. “농업경영체”란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.</p>	<p>3. “농어업경영체”란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.</p>
<p>4. “농업인 공익수당”이란 농업·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.</p>	<p>4. “농어업인 공익수당”이란 농업·농촌----- 농어업인에게 ----- -----.</p>
<p>5. “농업·농촌의 공익적 기능”이란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.</p>	<p>5. “농어업·농촌의 공익적 기능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. 가.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.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.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.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. 생태계 및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전 바.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</p>
<p>제3조(도지사의 책무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업인의 권리를 보장·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한 농업인 공익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</p> <p>② 도지사는 농업인 공익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촌</p>	<p>제3조(도지사의 책무) ① ----- ----- 농업업 의 ----- 농업업인----- ----- ----- 농업업인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농업업인 공익수당 -- ----- 농업업인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, 이를 도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.</p>	<p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4조(농업인의 참여) 농업인은 스스로가 공익적 가치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의 주체임을 인식하여, 마을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, 농생태계의 보존 및 모든 자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사용·관리하도록 노력한다.</p>	<p>제4조(농어업인의 참여) 농어업인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도지사는 <u>농업인</u>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<u>농업인</u> 공익수당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농업인</u> 공익수당 지급액</li> <li>2. 그 밖에 도지사가 <u>농업인</u> 공익수당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li> </ol>	<p>제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- ----- <u>농어업인</u> ----- <u>농어업인</u>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농어업인</u> -----</li> <li>2. ----- <u>농어업인</u> ----- -----</li> </ol>
<p>제6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4. (생략)</li> <li>5. <u>농업</u> 관련 기관·단체의 대표 4</li> </ol>	<p>제6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4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5. <u>농어업</u> -----</li> </ol>



현행	개정안
<p>③ <u>농업인</u> 공익수당 지급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.</p>	<p>③ <u>농어업인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1. 2. (생략)</p>	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
<p>④ (생략)</p>	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지급액 및 지급방법) ① <u>농업인</u> 공익수당 지급액은 연 <u>50만원</u>으로 한다.</p>	<p>제9조(지급액 및 지급방법) ① <u>농어업인</u> ----- <u>60만원</u>----- -----.</p>
<p>② <u>농업인</u> 공익수당 재원은 도비 및 시·군비 등으로 충당한다.</p>	<p>② <u>농어업인</u> 공익수당의 ----- -----.</p>
<p>③ <u>농업인</u> 공익수당은 충청북도 시·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 하여야 한다. 다만, 충청북도 시·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이 없을 경우 충청북도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③ <u>농어업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④ (생략)</p>	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조(지급신청 등) ① <u>농업인</u> 공익수당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·면·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10조(지급신청 등) ① <u>농어업인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②·③ (생략)</p>	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④ 그 밖에 <u>농업인</u> 공익수당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</p>	<p>④ ----- <u>농어업인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1조(지급제외) 다음 각 호의 <u>농</u></p>	<p>제11조(지급제외) ----- <u>농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업인</u>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신청 전(前)연도의 <u>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,900만원 이상인 농가</u></li> <li>2. 신청 전(前) <u>5년내</u>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<u>농업인</u></li> <li>3. 신청 전(前) <u>5년내</u>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위반 사실이 있는 <u>농업인</u></li> <li>4. 신청 전(前) <u>5년내</u> 농지·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<u>농업인</u></li> <li>5. <u>농업경영체등록 5년 미만 귀농인</u></li> <li>6.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립학교 교원연금 수급자</li> <li>7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·공기업 임직원</li> <li>8. 제6호와 제7호에 따른 사람과 <u>세대를 같이하는 농업인</u></li> </ol> <p>제12조(지급금의 회수 및 지급제한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<u>농업인</u> 공익수당을 수령한 경우, 부정 수급한 시점부터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, <u>농업인</u>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에서 5년간 제외한다.</p>	<p><u>어업인</u>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----- <u>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,700만원 이상인 농어가</u></li> <li>2. ----- <u>3년내</u> ----- ----- ----- <u>농어업인</u></li> <li>3. ----- <u>2년내</u> ----- ----- ----- <u>농어업인</u></li> <li>4. ----- <u>2년내</u> ----- ----- ----- <u>농어업인</u></li> </ol> 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제12조(지급금의 회수 및 지급제한) ----- <u>농어업인</u> ----- ----- ----- <u>농어업인</u> ----- -----.</p>

## 관련법령 발취

### □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농업”이란 농작물재배업, 축산업,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농업인”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3. “농업경영체”란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.
5. “농촌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.
  - 가. 읍·면의 지역
  - 나.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, 농업 관련 산업,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
9. “농업·농촌의 공익기능”이란 농업·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.
  - 가. 식량의 안정적 공급
  - 나.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
  - 다.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
  - 라.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
  - 마. 생태계의 보전
  - 바.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

## □ 수산업 · 어촌 발전 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수산업”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.
  - 가. 어업: 수산동식물을 포획(捕獲)·채취(採取)하는 산업,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
  - 나. ~ 마. (생략)
3. “어업인”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·채취하거나 또는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4. “어업경영체”란 어업인과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.
6. “어촌”이란 하천·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.
  - 가. 읍·면의 전 지역
  - 나. 동의 지역 중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
8. “수산자원”이란 수중(水中)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.

## □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“임업인”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.

## 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7. “농어업경영체”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.

제4조(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) ① 농어업·농어촌에 관련된 용자·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(이하 “농어업경영정보”라 한다)을 등록하여야 한다.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1. 농업경영체: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40조에 따른 농지·축사·임야·원예시설 등 생산수단, 생산농산물,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·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(이하 “농업경영정보”라 한다)

2. 어업경영체: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27조에 따른 어선·양식시설 등 생산수단, 생산수산물,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·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②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# 충청북도 농업인 등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## 1. 사업개요

- 농업·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농촌사회 공동화 대응 및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

## 2. 비용 발생 요인

- 농업인 등 공익수당 지급액(조례안 제9조)
- 농업인 등 공익수당 지급제외(조례안 제11조)

## 3. 관련조문

- 조례안 제9조(지급액 및 지급방법)
- 조례안 제11조(지급제외)

## 4. 비용 추계결과

- 재정수반요인 : 농업인 등 공익수당 지급액 인상 소요예산
- 추계의 전제 :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으로 함
- 추 계 결 과 : 224억원(도비 90, 시군비 134)
- 재원조달방안 : 도비, 시군비 ※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함

## 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## 6. 작성자 : 농정국 농업정책과장 민영완

## 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억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
세 입						
세 출	2,400	564	588	612	636	
기존 사업비	2,176	544	544	544	544	
추가 사업비	224	20	44	68	92	
<b>재원 조달</b>	<b>2,400</b>	<b>564</b>	<b>588</b>	<b>612</b>	<b>636</b>	
도비	소 계	962	226	236	245	255
	기존 사업비	872	218	218	218	218
	추가 사업비	90	8	18	27	37
시군비	소 계	1,438	338	352	367	381
	기존 사업비	1,304	326	326	326	326
	추가 사업비	134	12	26	41	55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					